

##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7제1항 중 “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”를 “모집공고 후 6개월까지”로, “(입주지정기간 개시일)”을 “(모집공고 후 6개월)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입주지정 개시일이 모집공고 후 6개월보다 빠른 경우에는 입주 지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1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4. 그 밖의 사항

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나목1) 청년 특별공급 유형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혼인하여 같은 호 나목2)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의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.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같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에 관한 적용례)

제14조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최초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

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차인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4조의7(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)</p> <p>①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(별표 1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)이 <u>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</u> 임대되지 않은 경우(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제14조의3에 따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의7(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모집공고 후 6개월까지</u> ----- <u>--(모집공고 후 6개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. 다만 입주지정 개시일이 모집공고 후 6개월보다 빠른 경우에는 입주지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.</u></p>

② · ③ (생략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